

이천시 회의실 사용 규정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제정 1996. 3. 1 훈령 제 15호
개정 1999. 2. 26 훈령 제 92호
개정 2007. 7. 2 훈령 제177호
일부개정 2021. 12. 23 훈령 제303호
전부개정 2022. 4. 29 훈령 제309호
일부개정 2023. 3. 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의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적절한 회의실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회의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3. 6>

1. 이천시청 내 대회의실(소통큰마당) 및 중회의실(창의마당)
2. 국·소·담당관(차량등록사업소 포함) 및 읍·면·동 회의실

제3조(사용관리) 회의실 사용관리의 책임자(이하 “관리 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6>

1. 이천시청 내 대회의실(소통큰마당) 및 중회의실(창의마당) : 자치행정업무 담당 부서장. 다만, 방송·조명·영상시설·무대 기계설비 운영 및 회의실 비품 관리는 해당 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국·소·담당관(차량등록사업소 포함) 회의실 : 주무 부서장 또는 부서장
3. 읍·면·동 회의실(방송, 영상, 비품 등 포함) : 읍·면·동장

제4조(사용자) ① 회의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이 공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은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
2. 시의 업무를 단체 등에서 대행하는 행사
3. 그 밖에 이천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자는 회의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정추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5. 특정 종교단체의 내부종교행사를 위한 경우
6. 단체 등의 내부행사를 위한 경우
7. 그 밖에 관리 책임자가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5조(사용신청) ①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 소속 직원은 사용 5일 전까지 전자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책임자에게 회의실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전자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회의실의 경우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사용 7일 전까지 별지서식에 따른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행사 관련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관리 책임자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여부 결정통지) 제5조에 따른 회의실 사용신청을 접수한 관리 책임자는 예약일 전일까지 사용승인여부를 신청인과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실 준비) 회의실 책상·의자 배열과 기타 소요설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회의실 청결 관리는 청사관리업무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 중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의실 사용 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그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실 사용 준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관리 책임자가 사용중지를 지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취소·중지) 관리 책임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부칙 <2022·4·29 훈령 제309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6 훈령 제315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이천시 회의실 사용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호 중 “체육지원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각각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